



의료법 개정 이후 비급여 관련 제도 변화

김동겸 선임연구원

■ 2015년 말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올해 10월에는 동 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제정·발령됨. 이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신설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가 있음.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 및 항목, 처벌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15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왔으며, 올해 10월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¹⁾이 제정·발령됨.

- 「의료법 시행령」 42조 신설(2016. 9. 29)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²⁾를 규정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3 신설(2016. 10. 6)을 통해 피조사 대상 의료기관³⁾, 조사항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발령(2016. 10. 6)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범위,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현황 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개 항목을 공개하기로 함.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3호(2016. 10. 6).

2) ①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②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③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3)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1항).

■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는 기존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신설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가 있음.**⁴⁾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됨.
 - 과거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⁵⁾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2015년 5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방법 등을 규정한 지침⁶⁾을 제정·발령함.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는 환자의 실질적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2015. 12. 29)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일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는 수행주체, 조사 대상, 조사항목, 위반 시 처벌규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함.**

- 첫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하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고지하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에서는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의료기관별,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의 최적·최고 비용 등을 공개함.
 - 종래에 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1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일부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 둘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는 모든 의료기관⁷⁾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셋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항목과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 등 총 52개로 동일함.
- 넷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하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4)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제45조의2.

5)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2010. 4)」,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2013. 7)」 등.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2015. 12. 21)」.

7) 종합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음.

8) 2016년 공개대상은 2016년 7월 31일 기준 150병상을 초과하는 2,019개 병원임.

대한 고지를 미이행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하에서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음.

〈표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공개에 관한 제도 비교

구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
관련 법적규정	- 의료법 제45조(10. 1. 19 개정,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 의료법 제45조의2(15. 12. 29 개정, 16. 9. 1 시행)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의3 -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환자에게 고지 (의료기관 내 책자 등 비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분석·공개 (매년 4월 1일, 2016년의 경우 12월 31일에 공개)
수행주체	개별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업무위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 150병상 미만 병원 및 요양기관은 2017년 1월부터 적용
조사항목	52개 항목(비급여 진료비용: 32개, 제증명수수료: 20개)	
위반 시 처벌규정	「의료법」 제63조, 64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1. 6. 20 신설) - 의료법 제45조 위반 시: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 시: 의료법 제64조제1항3호 및 6호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3항 (2016. 10. 06 신설) -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16. 10. 6) - 자료 미제출 시 현지 확인,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

주: 의료법 제45조의 위반 항목으로는 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고지, ② 제증명수수료 비용 미게시, ③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료 게시방법을 위반, ④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임.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및 공개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 및 항목, 처벌 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15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8%에 불과하여,⁹⁾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조사대상 및 공개항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또한,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이 발의된 상태임. [kiri](#)

9)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9. 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